

① 어디에 신고하나요?

수사기관(국번 없이 전화 112, 경찰관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과)에 신고해요.

② 신고하게 되면 경찰관서에서 번거롭게 하나요?

피해자를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만 정확하게 진술하면 돼요.
불가피한 경우 전화 진술도 가능해요.

③ 혹시 신고가 맘설여지나요?

성폭력상담소 또는 여성긴급전화(국번없이 110 또는 1366)를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어요.

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

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
- 여성긴급전화(국번없이 110 또는 1366)에 문의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(상담·수사·시설 입소·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)
- 해바라기센터(1899-3075)에 문의하면 전국 37개소 중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계하여 24시간 One-Stop 운영체계를 갖추고 상담·의료·수사·법률 등을 지원해 드려요.
- 법률 지원은 성폭력위기센터(02-883-9284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(02-3476-6515)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요.
 - 또한,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제도

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

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·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·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.

- 아동·청소년 대상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
-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, 성행위 강요, 성행위 목적이 매매행위, 알선영업행위 등
- 장애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간음,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, 아동성학대 행위 등
-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·배포 등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,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,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,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



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※ 근거 :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

신고의무 대상기관

유치원, 학교, 의료기관, 아동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어린이집, 학원 및 교습소,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, 한부모가족복지시설,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,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보호·재활센터

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❶ 신고의무자 인가요?

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·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어요.

❷ 신고의무자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나요?

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성폭력 등은 범죄에 해당되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해요.

❸ 신고를 하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?

신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으며,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.
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요청할 수 있어요.
※ 안내전화 : 국번없이 110 또는 1301

❹ 신고를 하고 싶으나 피해자가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?

피해자나 보호자가 거부하더라도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책임자(시설장)나 종사자는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해요.

한편,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신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.

※ 신고사항을 위반한 운영책임자(시설장)나 종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어요.

❺ 왜 빨리 신고해야 하나요?
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신고를 통해 아동·청소년의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거확보를 할 수 있어요.

